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● 사업목적

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**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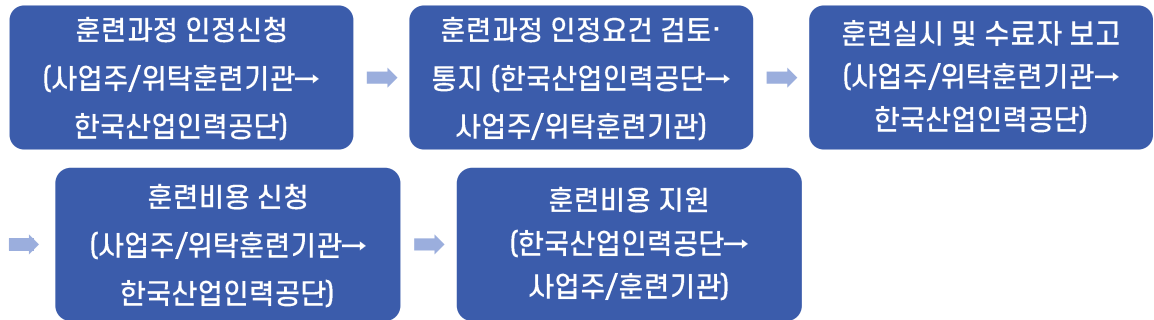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대상

고용보험가입 사업주

● 지원내용

지원내용	지원요건	지원수준
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선지원대상기업 : 소속 근로자 대상, 1일 8시간 이상 훈련(집체훈련 기준) 대규모기업 : 소속 근로자 대상, 2일 16시간 이상 훈련(집체훈련 기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우선지원 대상기업) 90~100%, (상시노동자 1,000인 미만,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) 60%(원격훈련 80%), (1,000인 이상) 40% * 단,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% 지원
유급휴가훈련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- 우선지원대상기업 :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, 20일 이상 훈련 - 대기업 :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, 180시간 이상 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훈련생 인건비) 소정 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%(대기업 100%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체인력인건비 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
훈련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숙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비 1일 3,300원 한도, 숙식비 1일 14,000원 한도(1개월 3300천원 한도)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한국산업인력공단 : 1644-8000
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